

의안번호	제 36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3년 8월 29일

#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8. 29.  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 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및 제13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)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,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제3항)
- 나. 사용요건 확대(안 제4조제3항)
- 다. 용도중복 삭제 및 명확화, 기금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제3항)
- 라. 조항삭제(안 제6조제3항)
- 마.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신설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)
- 다. 합의: 해당 없음
- 라. 기타
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 - 2) 입법예고(2023. 7. 28 .~2023. 8. 17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3) 규제심사: 규제 심사대상 아님
  - 4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 - 5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적립”을 “전년도 말 기준 적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최근 3년 평균”을 “직전년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장기간”을 “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장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

5.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,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예산과장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
나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

다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3항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의 개정규정,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, 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, 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, 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, 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·②(생략)          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·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.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·②(생략)           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<u>적립</u>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법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<u>최근 3년 평균</u>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</li> </ol>	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·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  <u>전년도 말 기준 적립</u>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직전년도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li> </ol>

<p>2. (생략)</p> <p><u>3. 지방채상환 또는 임대형민자사업(BTL)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</u></p> <p>4. <u>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5. 재정여건상 교육정책사업,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6조(기금의 운용 심의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</u></p> <p><u>4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장기간-----</u></p> <p><u>5.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,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금의 운용 심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</u></p>
--	---

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 
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 
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 
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부교육감, 기획  
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예  
산과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 
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 
위촉하는 사람

가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  
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 
나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 
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 
갖춘 전문가

다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  
는 사람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  
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 
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
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 
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

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<신 설>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 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<신 설>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 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

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 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
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 
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 
있다.

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  
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  
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 
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 
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 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 
다.

### <신 설>

제7조 · 제8조 (생략)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 
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 
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 
된다.

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7조 및  
제8조와 같음)

## 관계 법령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-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-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-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-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

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